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농식품부 조직개편 등 반영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차관보 폐지, 보조·보좌기관 신설,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등 조직개편 추진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주요 조직개편

- 1) 차관보 폐지에 따른 농업혁신실 대체 신설 및 기능조정
- 2) 식품산업정책실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(식품산업정책실 → 식량정책실)
- 3) 국제협력국, 축산정책국 및 농업정책국 폐지 및 기능 이관

- \* 국제협력국 → 기획조정실(국제협력관), 축산정책국 → 식량정책실(축산정책관), 농업정책국 → 농업혁신정책실(농업정책관) 및 식량정책실(식량정책관)

- 기구 통폐합 및 대체 신설

구 분	내 용	개정안 관련
대체(상계)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물복지환경정책관(검본 영남지역본부장 상계)</li> <li>■ 농촌탄소중립정책과(외식산업진흥과 대체)</li> </ul>	안제8조
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업정책과 + 경영인력과 → 농업경영정책과</li> <li>■ 식품산업진흥과 + 외식산업진흥과 → 식품외식산업과</li> <li>■ 종자생명산업과 + 농기자재정책팀 → 첨단기자재종자과</li> </ul>	안제9조
총액팀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유무역협정팀(안제5조관련), 반려산업동물의료팀(안제8조관련), 청년농육성정책팀(안제12조관련), 그린바이오산업팀(안제9조관련), 축산유통팀(안제11조관련)</li> </ul>	

○ 실·국, 과단위 명칭 및 기능 변경

구 분	내 용	개정안 관련
1급 명칭 및 기능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차관보 및 식품산업정책실 → 농업혁신정책실 및 식량정책실</li> </ul>	안제2조, 안제9조, 11조
관과 명칭 및 기능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업생명정책관 → 농식품혁신정책관 * 국 → 관 : 국제협력관(안제8조), 농업정책관(안제9조), 축산정책관(안제11조)</li> </ul>	안 제 9 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개발과 → 농촌계획과, 농촌사회복지과 → 농촌사회서비스과, 농촌산업과 → 농촌경제과</li> </ul>	안 제 8 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산업정책과 → 스마트농업정책과, 식품산업정책과 → 푸드테크정책과</li> </ul>	안 제 9 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간척지농업과 → 농업시설안전과</li> </ul>	안 제 11 조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정과제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·조정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

2. '22년 정기직제, '22년 수시직제, 통합활용정원 등 반영(안 제29조, 안 별표 6, 안 별표7, 안 별표8, 안 별표9, 안 별표10, 안 별표11, 안 별표14) 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'22년 정기·수시직제 및 통합활용정원 반영
  - (정기직제 반영) 농촌공간계획 수립, 그린바이오 육성 등(24명)
  - (수시직제 반영) 동물보호·복지 기능 강화, 청년농업인 육성 등(17명)
  - \* (정원 상계이체) 본부 3급 또는 4급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으로 이체하고,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고위나를 본부로 상계 이체
  - (통합활용정원) 범정부 차원 인력 통합활용을 위한 감원(△31명)
- (일반임기제)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과 의견수렴하는 청년정책관련 직무 보좌수행을 위한 일반임기제 임용 등(기존 정원 내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총 10명 증원('22년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 +41명, 이체 ±1, 통합활용정원 △31명)
  - \* ('22년 정기직제) +24명 (본부 6 : 4·5급2, 5급2, 6급2 / 소속 18 : 6급3, 7급8, 8급4, 연구관1 연구사2)
  - \* ('22년 수시직제) +17명 (본부 14 : 4·5급2, 5급6, 6급6, / 소속 3 : 연구관1 연구사2)
  - \* (상계이체) ±1명 (본부 ±1 : 고위나1, 3·4급△1, 소속(검역본부) ±1 : 3·4급1, 고위나△1)
  - \* (통합활용정원 감원) △31명 (본부△5 : 5급1, 6급2, 7급1, 관리운영9급1, 소속△26 : 6급6, 7급9, 8급8, 9급2, 관리운영9급1)
- 일반임기제(6급 1명) 임용이 가능하도록 변경
  - (현행) 5명(5급 5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- (개정) 6명(5급 5명, 6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본부 정책기능 강화와 현장인력 확충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

### 3. 한시정원(협업정원) 연장(안 제38조 안 별표18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(협업정원)의 존속 기한 도래(2022.12.31.까지)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한시정원(협업정원/2명)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명(보건연구관1)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1명(보건연구사 1명)은 감축  
(안 제38조, 별표18)
  - (현행) 2022년 12월 31일까지 → (개정) 2023년 12월 31일까지(1년 연장)
  - (현행) 보건연구관 1, 보건연구사 1 → (개정) 보건연구관 1(보건연구사 △1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질병관리청과의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가능

#### 4. 본부 평가대상 조직 신설(안 제34조, 별표16)

#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구 상계 신설(동물복지환경정책관<sup>고위나</sup>)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지정 필요

#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평가대상 조직관련 별표 개정(별표16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동물복지환경정책관	0명	2025년 9월 30일까지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신설기구의 평가대상 조직 지정을 통해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

## 5. 총액팀 신설 관련 시행일 조정 및 통합활용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(안 부칙 신설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시조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만료(22.12.31.)에 따라 대체 신설하는 자유무역협정팀(총액팀)의 시행시기를 고려할 필요
  - \*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 규칙 공포 예정일 : 12.20.
-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공포시점(12.27.예정)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둘 필요
  - \*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 규칙 공포 예정일 : 12.20.
- 총액인건비제 활용 신설기구 기한 적시 등 필요
- 통합활용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둘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한시조직 폐지에 따른 대체 신설 총액팀 시행시기 달리 적용, 총액팀 신설 폐지 및 통합활용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관련 사항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, 별표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9조에 따라 이 규칙으로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팀·반려산업동물의료팀·청년농육성정책팀·그린바이오산업팀·축산유통팀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.  
②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농기자재정책팀 및 농촌재생에너지팀을 폐지한다.

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대통령령 제00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(5급 1명, 6급 2명, 7급 1명, 관리운영9급 1명)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6명(6급 6명, 7급 9명, 8급 8명, 9급 2명, 관리운영9급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-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직운영 및 통합활용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발생에 대한 진행 경과를 부칙에 둠으로써 인력운영의 자의성 배제